

조선후기 守令의 법적 지위와 行刑의 현실

-『牧民心書』 분석을 중심으로-

심재우(한국학중앙연구원)

1. 머리말
2. 수령의 법적 지위와 권한
3. 刑政 운영의 관행과 실상
4. 정약용이 제시한 수령 行刑의 이상
5. 맺음말

1. 머리말

*문제 제기

조선시대 관료기구의 말단에서 직접 백성들과 접하는 것이 군현 수령이다. 조선시대 고을 수령의 행정은 수령의 사법권과 형벌을 바탕으로 행사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선시대 수령에 관한 연구가 여럿 진행된 바 있지만, 정작 수령의 법적 지위와 규정, 그리고 실제 수령의 行刑權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가에 대한 깊이있는 검토는 미흡했다고 판단한다. 본고는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중심으로 수령 행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사법기구로서의 수령 관련 규정, 현실, 이상을 점검해보기로 한다.

*대표 연구

오갑균, 「수령의 사법적 기능」, 『조선시대 사법제도 연구』, 삼영사, 1995

김선경, 「『민장치부책』을 통해서 본 조선시대의 재판제도」, 『역사연구』 1, 1992

矢木毅, 『朝鮮朝刑罰制度の研究』, 朋友書店, 2019

*검토 내용

법전 규정에 나오는 수령의 直斷權과 囚禁 권한 / 수령의 실제 斷獄 유형과 관찰사와의 관계 / 수령 行刑의 대상과 범위 / 殺獄 사건의 처리와 문제점 등

*주요 자료

- 『목민심서』를 중심으로 분석

- 기타 : 民政書·報牒·民狀, 各司謄錄

2. 수령의 법적 지위와 권한

1)수령의 중요성과 지위

-수령의 중요성 : 목민관은 절대 구하지 마라(정약용).

-주요 업무 :수령 업무는 부세수취와 재판이 핵심(목민서)

2)수령의 법적 권한과 직단권

-명칭 시기 수령의 권한

-수령은 直囚衙門의 하나로 直斷權은 答50.

수령이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으니 마땅히 감사에게 비밀히 의논하여 법을 시행하도록 할 것(吏典 東吏)

3. 刑政 운영의 관행과 실상

1) 남형의 실상

- 濫刑, 酷刑의 실상

2)直斷 범위의 초과 문제

- 관찰사에게 보고하는 사안은 주로 인명사건, 예외적인 중대 역모사건. 사실상 모든 일은 수령이 처리한 것이 아닐까?

3)殺獄 처리의 양상과 각종 폐단

4. 정약용이 제시한 수령 行刑의 이상

1)법률지식 습득 문제

-법은 임금의 명령 : 대명률, 대전통편 책상위에 두고 항상 찾아보고 알고 있어야 법을 지키고 명령 시행하고 소송 판결하며 일을 처리할 수 있다. 법에 금지된 것은 조금도 범해서는 안되고, 고을 관례 오래되었어도 국법에 현저히 거슬리고 벗어난 것이며 범해서는 안된다. 대전의 원편, 속편, 통편 등 증보 거쳤으나 소략하고, 조목 분류도 잘못된 것 있음. 목민에 뜻을 둔 자는 마땅히 위 법전을 취하여 요긴한 조목을 유별하여 나누고, 『만기요람』, 『비국등록』, 『고사신서』 등 책을 취하여 요긴한 곳을 뽑아내어 모아서 한편의 책으로 만들어 두고 닦칠 때 상고해봄이 좋겠다(奉公 守法)

2)남형의 제한 및 법의 탄력적 적용 강조

- 수령의 형벌 시행함에는 마땅히 세등급. 民事에는 上刑 시행, 公事에는 中刑 시행, 官事에는 下刑 시행. 私事에는 형벌이 없어야 한다(刑典 愼刑)

-수령이 탄력적으로 법을 적용할 것 강조 : 牛禁 등 徒刑으로 집행해야 할 것은 贖錢 징수하고 감영에 보고할 것 없이 처리할 것

-국법에 금하는 바와 刑律에 실려있는 바는 조심 두려워하여 감히 함부로 범하는 일이 없도록. 일을 만날 때마다 國典을 상고하되, 법률을 범하고 어기는 것은 시행해서는 안된다. 한결같이 법만 지키는 일은 때로 너무 구애받는 것이 될 수있다. 변통 필요. 자기 마음이

天理의 公에서 나왔다면 법이라해서 반드시 엄매여 지킬 것은 없다(奉公 宣化)

3)아전들에 대한 단속 강화

- 官屬들의 행형 제한 : 수령 권한은 태형 50대 자단에 불과. 지금 법과 기강 해이하여 鄉廳과 吏廳의 笞刑이 셀 수 없고, 軍官, 將官의 곤장질이 한도가 없으니 백성이 어떻게 견디겠는가? 수령은 마땅히 사사로이 약속할 것. 향청은 태형 10대 넘지 못하되 읍민에 한하며(읍밖의 백성은 태형 금지), 이청은 태형 10대를 넘지 못하되 관속에게만 한하고(凡民, 일반백성은 금지), 군관, 장관의 곤장질은 3대를 넘지 못하되 군졸에게만 한한다(범민은 금지). 이를 어긴 자는 엄히 다스린다고 경고할 것(吏典 馭衆)

5.맺음말

*예상 결론 : 중국 수령의 직단권은 장100이나 조선은 태50에 그침. 실제는 약한 듯 보이나, 군현 내에서 상당히 막강. 관찰사에게 올리지 않고 자체 처리도 많다. /행형은 행정의 일환이면서, 행형은 수령의 행정을 강력히 뒷받침하는 일상적 물리력이었다. 특히 수하 아전들 부리는 데에는 강력했다고 봐야할 듯! /지방 단위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살육”